

# 산지전용 [ ] 신고서 [ ] 변경신고서

(앞쪽)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					
신고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		
	주소		전화번호						
	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								
소재지			지적	m <sup>2</sup>					
전용면적	계	임업용산지		공익용산지		준보전산지			
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	m <sup>2</sup>		m <sup>2</sup>			
부산물 생산현황	벌채수량			굴취수량			토석		
	나무의 종류	본수	나무부피	나무의 종류	본수	나무부피	계	석재	토사
		본	m <sup>3</sup>		본	m <sup>3</sup>	m <sup>3</sup>	m <sup>3</sup>	m <sup>3</sup>
전용목적									
전용기간									
변경사항	변경 전			변경 후			사유		

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제1항·제1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·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·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[ ]신고 [ ]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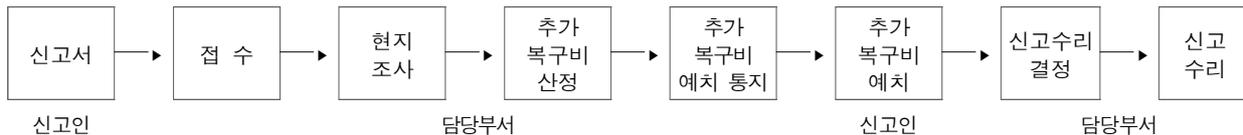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**산림청장**  
**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**  
**지방산림청장,**  
**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** 귀하  
**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**  
**국립산림과학원장,**  
**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**

\*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,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수수료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: 뒤쪽 참조

### 처리절차



<p>작성방법 및 첨부서류</p>	<p>1. 산지전용신고서: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</p> <p>가. 산지전용신고의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사업계획서(산지전용의 목적, 사업기간,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, 입목·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,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</li> <li>2)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)</li> <li>3)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</li> <li>4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"측량업자등"이라 합니다)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</li> <li>5)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·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(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, 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)</li> <li>6)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) 또는 3)에 해당하는 서류 1부(신고인이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7)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</li> </ol> <p>나. 변경신고의 경우: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2. 축산업등록증(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/ol>
<p>수수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산지전용신고서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5천원</li> <li>2)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: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</li> </ol> </li> <li>나. 변경신고의 경우: 없음</li> </ol> </li> <li>2. 산지전용변경신고서: 없음</li> </ol>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(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